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2020 ~ 2025

국토교통부

제1장 계획의 개요	1
제2장 기본계획 수립여건 분석	4
제3장 기본계획의 체계	33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36
제5장 추진일정	53
[별첨]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	58

제1장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성격
- 2. 계획의 범위
- 3. 수립 경위

1 계획의 성격

□ 기반시설 관리 분야의 종합계획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대한민국 기반 시설 관리의 종합적 추진방향을 제시
 - *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제도개선, 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기반시설 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

○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2025년
 - * 목표연도의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은 6년('20~'25) 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3 수립 경위

- '18.12.: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 ('18.12.31. 공포, '20.1.1. 시행)
- '18.12.: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TF' 구성·운영
 - * 국토교통부(단장: 제1차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 * 5차례 회의('18.12, '19.2, '19.4, '19.10, '19.12)를 통해 협조체계 구축, 기반시설 범위(안) 확정,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발표, 기본계획 마련 등을 추진
- '19.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국무회의)
- '19. 7. :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업착수 ('19.7.17.)

• 비전·목표 및 과제발굴 전략 등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19.9.~12.)

- 4개 분과(제도·정책, 유지관리, 재정, 정보화), 30인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 비전·목표 및 과제 선정 자문회의(3회)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 ('19.11.)

- 광역지자체 정책설명회 ('19.11.13.)
- 중간보고회 ('19.11.21.)
- •관계부처 실무진 회의 ('19.11.26.)

 \downarrow

관계부처 의견수렴 ('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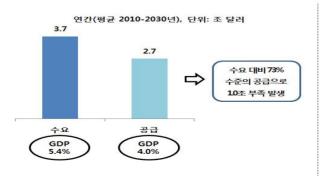
- •1차 의견수렴 ('19.11.29.~12.6.)
- 2차 의견수렴 ('19.12.12.~12.23.)
- '19.12. : 기본계획 공청회
- '20. 4.: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 '20. 5. : 국무회의 심의 및 고시

제2장 기본계획 수립여건 분석

- 1.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
- 2. 주요 국가별 기반시설 관리 정책 동향
- 3.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 현황
- 4. 기반시설 관리의 현황 진단

[1] 수요 변화 → 유지관리·성능개선 수요의 비약적 증가

- □ OECD 국가들의 기반시설 공급(투자)은 축소되는 반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포럼, '14)
 - 인구감소·경제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기반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축소·지연될 것을 우려
 - * '10~'30년 OECD 회원국의 기반시설 수요 3.7조\$ 대비 공급은 2.7조\$에 불과 하여 수요와 공급 불일치(Infrastructure Gap)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붕괴 등의 문제에 봉착한 상태이므로, 유지 관리·성능개선 수요가 신설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OECD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기에 구축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투자를 적기에 하지 않아 시설물 붕괴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 일본 사사고(笹子) 터널 붕괴('12년), 미국 I-5 고속도로 교량 붕괴('13년), 이탈리아 제노바 모란디 교량 붕괴('18년), 프랑스 남부 현수교 붕괴('19년) 등
 - 주요 국가들은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계획****도 수립
 - * (미국) 기반시설 관리 규모는 '14년 전체 예산의 56.5% (美 국회예산처, '15) (일본) '18년 전체 공공공사 중 유지관리비가 29.9% (日 국토교통성, '19)
 - ** 미국 3,050억 달러('16~'20), 일본 547조 엔('15~'54년), 영국 4,830억 파운드 ('16~'21), 독일 1,416억 유로('16~'30) 투자 계획이며,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



【 OECD 기반시설 수요·공급 부족 전망 】



【 美 기반시설 신규/유지관리 투자 추이 】

- □ 한국도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공급 지연으로 인한 미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투자 확대** 필요성 증대
 -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된 기반시설의 **개선 주기** 도래에 따라 유지관리·성능개선의 소요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
 - *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추정 결과 '16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53.4조원 예상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기반시설 서비스 품질 및 이용의 국민 요구수준 상향*과 안전 기대치 증가
 - * 이용 접근성·편리함, 이용량을 반영한 충분한 규모, 새로운 유틸리티 설치 등
 -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투자지연**은 **안전·서비스 수준 저하**를 유발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이용을 위한 **미래부담 증가** 초래
- ☞ 급증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 요구수준 충족과 안전 확보 필요

(2) 관리체계 변화 → 사후 대응형 관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전환

- □ 선진국은 기반시설 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관리**로 전환하고, 기반시설 수명연장과 효율적 투자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혁신** 추진
 - 국가적 차원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종합계획, 거버넌스 등), 성능 중심의 자산관리 체계 도입 등 전략적 관리 시행
 - * (일본)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독일) 교통 인프라 계획 2030 수립,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구성·운영 등
- □ 한국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을 통해 사후 대응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관리 및 투자 효율화 기반 마련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수준 및 방향을 제시하고, 소요예산의 조달·운용 전략 마련

- 선제적 관리를 통해 연차적 유지보수에서 최적 관리 시점·방법 예측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적 비용 절감* 도모
 - * 서울특별시 교량에 선제적 유지관리를 적용('17~'30년)할 경우, 사후 대응형 유지관리 대비 누적 8,287억(34%) 절감효과 발생 추정



【 선제적 유지관리 비용효과 추정 (서울특별시 교량, '17~'30년) 】

사후 대응형 관리	선제적 관리
•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재 확인 → 손상부재의 연차적 유지보수 시행	• 부재별 최적 유지보수 시점·방법 예측 → 손상 초기 또는 이전에 유지보수 시행
대수선 사후 수선	지속적 유지관리 안전마진 안전기준 예방적 유지관리 1차조치 2차조치 3차조치 4차조치 유지관리 총비용 사용 연수

【 사후 대응형 관리와 선제적 관리 비교 】

☞ 선제적 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투자 효율성 확보 필요

(3) 사회·환경여건 변화 → 재해·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요구 증대

- □ 삶의 질이 중시되는 **복지사회**와 안전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이 적극 보호되는 **안전사회 구현**에 관한 요구는 한국사회의 주요 흐름
 - 안전사회와 복지사회를 모두 충족하는 **행복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안전성·편의성 확보는 필수이나,
 -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명·재산피해 위험성 증가
 - * 서울 아현 KT 지하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인천 붉은 수돗물, 안양 인덕원 광역상수관 파열, 서울 서대문 지방상수관 파열 등
 -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회 구현에 관한 국민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반시설 안전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
 - * 건축물·시설물이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12년 21.5%→ '14년 51.7%→ '16년 34.1%→ '18년 32.8% (통계청 사회조사, '18년)
- □ 새로운 형태의 기후·사회적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국민 일상생활 안전보장과 관리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요구 증가
 - 전례 없는 **지진·홍수***로 기반시설 붕괴 우려 등 **위험**이 **산재**하고, **싱크홀****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 대부분 도시 하수처리 및 침수방지 시설은 시간당 $60 \sim 70$ mm로 설계되어 있으나, '19.10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삼척·강릉 지역 시간당 최대 129mm의 폭우 발생
 - ** 지반침하 발생 : '14년 69건→ '16년 255건→ '18년 338건→ '19년 192건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안전 취약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14~'18년),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777개소 중 260개소는 미이행
- ☞ 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생활안전수준 향상 필요

(4) 기반시설 관리방식 다변화 → 스마트 유지관리 방식 도입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혁신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 요구 증가
 -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기반시설 요구사항은 **안전-성능-가치**로 **확대**되며, 달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지능화, 관리 자동화)를 추구
 - * 스마트 인프라(Infrastructure 3.0)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 지적능력을 갖게 되고,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 단계를 거쳐 향후 20년 내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17)
 - 향후 기반시설 투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리적 확충·재투자가 아닌, 저비용·고효율이 발휘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중점
- □ **안전·유지관리** 분야에도 초연결, 초지능화, 무인화·자동화, 수요자 중심 특성을 지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 요구 증가
 - 디지털 트윈, IoT, AI, 로봇/자동장비,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유지관리* 필요성 대두
 - * 스마트 유지관리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성능평가·예측·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
 - 향후 유지관리 시장은 **기술 융·복합형 新시장**으로 진화하고, **복합** 문제 해결 역량을 지닌 기술자 수요도 증대
- □ 기반시설은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 물류비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 증대,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를 강하게 요구
 - 스타트업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과 서비스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여건 조성 필요성 증가
 - 세계 인프라 시장 규모('17년 기준 10조 달러)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 되므로, 국내 안전·유지관리 기업 진출 필요성 대두
- ☞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관리방식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1] 미국 → 시설물 노후화 심각, 투자확대 및 기술개발로 대응

- □ 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의 적정시기를 놓쳐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 으로 진행되어 교량의 붕괴 등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
 - '80년대부터 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한 투자 지연으로 안전성 확보 결여
 - '17년 기준 **기반시설 상태***는 평균 **D**⁺(나쁨)이며, 대다수의 시설물이 설계수명이 다하고 안전수준도 위험한 상태 (미국 토목학회, 2017)
 - * 철도 B. 교량·항만 C⁺, 도로·공항·수로·상수도·댐 D. 하수도·에너지·학교 D⁺ 등
- □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MAP-21 혁신법안을 비준하여, 성능중심의 전략적 유지관리 의무화 및 투자확대 방안 마련
 - 유지관리·성능개선 사업의 성과 검증을 위한 성능기반 목표수준 설정과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인프라 유지관리에 신기술* 접목
 - * 드론·위성사진 활용 노후화 감시. 크라우드소싱 활용 도로 평탄성 평가 등
 - 노후시설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기반시설물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민간투자협력** 유도 추진
 - * 트럼프 정부는 공공기반시설물 투자계획(1.5조\$)을 공개하고. 민간투자협력을 유도하는 '미국 기반시설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를 발의

[2] 일본 →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 □ 경제 고도 성장기에 완성된 기반시설 노후화 비율 급증으로 유지 관리 비용도 비약적으로 증가
 - 사용연수 30년 이상 기반시설 비중은 교량 67%, 터널 50%, 하천 64%, 항만 58% 등 상당수가 노후화 진행 중
 - 이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비용도 '13년 3.6조엔→ '23년 4.3~5.1조엔 → '33년 4.6~5.5조엔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

- □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여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14~'20년)을 수립하고, **주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 유지관리 추진
 - *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은 노후 인프라 중대사고 Zero화, 인프라 유지관리 건전성 확보, 세계 유지관리시장 30% 점유를 목표로 수립
 -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해 내각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부장관급회의 설치
 - '20년까지 기본계획(국가), 행동계획(관리감독기관), 개별시설계획(관리 주체)을 수립·이행하여 상호 연계 관리체계 구축



【 일본 관계부처 부장관급회의 】



【 日 인프라 장수명화를 위한 계획 체계 】

-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
 - * 국토교통성이 국제자산관리 표준모델인 ISO55000 보급을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하여. 센다이 광역지자체('13년, 상수도 분야), 수자원공사('14년)가 인증
- ** 기존 시설의 관리·운영권(사용료 부과 포함)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Concession 계약을 '22년까지 7조엔 규모로 확대(일본 내각부 '19년)

(3) 영국 → 노후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장기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 기반시설 상태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나, 성능개선은 미진
 - '14년 기준 시설별 상태는 광역교통 B(양호), 폐기물 C⁺(보통), 에너지 C⁻(보통), 지역교통 D⁻(나쁨) 수준으로 관리 (영국 토목학회)
 - 특히, 상태가 불량한 지역교통 시설의 1/3은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14년 기준 관련 예산은 '11년 대비 11% 감소

- □ **컨트롤 타워 조직**을 구성하여 기반시설 장수명화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운영의 **장기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국가인프라위원회(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를 설립하여,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 향후 5년간('16~'21년) 총 4,830억 파운드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 적극 유치
 - * 유지관리·성능개선 사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묶음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

(4) 독일 → 기반시설 성능개선 투자 확대

- □ **도로 상태 불량**으로 **교통 혼잡이 악화**되고, **용량 부족**으로 수송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 '16년 기준 불량한 도로시설물 비중은 교량 49%, 제방 85%, 배수 87%, 암거 33%로 교통 정체 초래 (독일교통부,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2016)
- □ 기반시설 재정비를 골자로 하는 '독일 교통 인프라 계획 2030'을 수립,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추진
 - '30년까지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성능개선에 전체 투자의 65.7%에 해당되는 1,667억 유로(유지보수 1,416억€, 성능개선 251€) 투자 계획

【 외국사례 주요 시사점 】

- 이 (미국) 유지관리 투자의 적정시기를 놓쳐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교량붕괴(예: '13년 I-5 스캐짓강 다리 붕괴) 등 문제 발생
 - ⇒ 성능 중심의 전략적 유지관리 의무화 및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o (**일본**)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급증 및 터널 붕괴(예: '12년 사사고 터널 붕괴)
 - ⇒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및 내각부 중심의 이행체계 구축
- o (영국) 지역교통시설 상태 불량
 - ⇒ 컨트롤 타워 조직 구성 및 인프라 건설·운영의 장기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독일) 도로 상태불량과 용량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수송량 증가 감당여력 미흡 ⇒ 교통 인프라 계획 2030 수립 및 유지관리 투자 확대

3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 현황

1.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국민생활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을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

※ 대상시설 선정기준

- ①「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건축물(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제외
- ② 사고 시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
 - *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생기는 피해도 고려
- ③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하시설물(공급시설·공급망 위주**로 선정)
- ④ 공공시설 원칙으로 하되, 민간시설이라도 공공성이 높은 시설

【 기반시설관리법 적용 대상 기반시설 (15종) 】

교통시설 (4) ### 설도	분류	기반시설	범위 [소관법령]		
교통시설 (4)		도로	도로 [도로법]		
교통시설 (4)		** -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항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교통시설 (4)	宣工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유통·공급시설 (7) 유통·공급시설 (7) 유통·공급시설 (7) 유통·공급시설 (7) 유통·공급시설 (7)		항만	항만시설 [항만법],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유통·공급시설 (7) 전기공급설비		공항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대한 보기 등 한 분 등 수 등 수 등 수 등 수 등 수 등 한 등 등 한 등 등 한 등 등 한 등 등 한 등 등 등 한 등 등 등 한 등		ᄉᆮᆚᅼ서비	일반·공업용수 중 취수·저수·정수·배수시설 및		
유통·공급시설 (7)		구 도등답 길미	도수·송수·배수관로 [수도법]		
유통·공급시설 (7)		저기고그서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154kV 이상)		
*************************************		선기공급실비	[전기사업법]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 [도시가스사업법] 열공급설비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수송관 [집단에너지사업법] 통신시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전기통신사업법] 공동구 공동구 [국토계획법] 송유설비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대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설비 중 대(발전용대) [전기사업법]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필요시 지선 포함),	O 투.고그시서 (7)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최고사용압력 1MPa		
FUNA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전기통신사업법] 공동구 공동구 국토계획법] 송유설비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당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대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설비 중 대(발전용댐) [전기사업법]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필요시 지선 포함),	π ο ου ν ε (/)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도시가스사업법]		
공동구 공동구 [국토계획법] 송유설비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설비 중 댐(발전용댐) [전기사업법]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필요시 지선 포함),		열공급설비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수송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송유설비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저수지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기설비 중 댐(발전용댐) [전기사업법]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필요시 지선 포함),		통신시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전기통신사업법]		
방재시설 (3)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설비 중 댐(발전용댐) [전기사업법]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필요시 지선 포함),		공동구	공동구 [국토계획법]		
방재시설 (3)		송유설비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방재시설 (3) 대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설비 중 대(발전용대) [전기사업법]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필요시 지선 포함),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법]		
저수지 냄 [냄건설 및 수변시역시원 등에 관한 법률], 전기설비 중 댐 (발전용댐) [전기사업법]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 (필요시 지선 포함),	바베기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 (필요시 지선 포함),	당세시설 (5)	저수지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 (필요시 지선 포함),			전기설비 중 댐(발전용댐) [전기사업법]		
	하거기 ★ 니서 /1\	취소도	공공하수도 중 간선 하수관로 (필요시 지선 포함),		
환경기조시설 (1) 아무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2. 기반시설 관리체계 및 관리주체

- □ (관리체계)「기반시설관리법」시행 전에는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을 관리·감독
 -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시설, 상수도(급·배수관 제외),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감독
 -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매년),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에서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 제시
 -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수**(급·배수관)·**하수도**, **가스· 송유·열수송관**, **전력·통신구 및 어항시설은 개별법**에 따라 정기검사^{*}, 안전점검^{**} 등을 시행
 - * 열수송관(집단에너지사업법)은 정기검사(1회/1년),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안전검사(1회/2년), 가스시설(도시가스사업법)은 관리계획 수립, 수시·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 ** 어항시설(어촌어항법)은 정기점검(1회/반기), 정밀점검(1회/4년), 정밀안전진단(필요시) 시행
 - 이와 별도로 건설공사 중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대책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 관리·감독
 - * 안전점검(육안, 매년), 공동조사(탐사, 5년),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등
- □ (관리주체) 대부분의 시설은 국가·지자체가 관리주체이며, 위탁·업무 대행·협약 등의 형태로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자가 관리
 -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통신구 등 일부 지하시설물은 공공과 민간이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 시설도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
 - * 민간관리 비율 : 가스관 90%, 송유관 95%, 열수송관 42%, 통신구 100%

3. 기반시설 관리현황

□ 교통시설

- (도로)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광역시도, 지방도 등 **7종**을 관리 (「도로법」제2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관리하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관리 대행(위임)하거나 민자 법인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관리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고속국도	4,767	국토교통부장관 (대행: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 한국도로공사 관리 3,991km • 민자법인 관리 776km		
일반국도	13,851	국토교통부장관 (시구역: 시장)	• 국토교통부 관리 11,719km •시 관리 2,132km		
특·광역시도	4,905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	16,844	도지사 (시구역: 시장)	도지사 관리 13,271km시 관리 3,573km		
시도	24,824	시장			
군도	21,105	군수			
구도	16,169	구청장			
합계	102,465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운영 중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운영 중인 도로의 연장		

【 도로 관리현황 】

- (철도)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시철도운영자가 고속철도 및 일반 철도, 도시철도를 관리 (「철도산업법」제26조 및 「도시철도법」제2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관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으로 하여금 대행(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거나, 민자법인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관리
- 도시철도운영자(지자체, 민자사업자)가 도시교통 권역에서 건설·운영 되는 철도·모노레일 등 도시철도를 관리

【 철도 관리현황 】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고속철도	657	국토교통부장관 (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657.4km
일반철도	3,666	국토교통부장관 (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법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3,489km • 민자법인 관리 177km
도시철도	702	지자체·민자사업자	• 지자체 관리 611km • 민자사업자 관리 90km

- (항만·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역항과 연안항, 국가어항을 관리 (「항만법」제20조 및 제92조,「항만공사법」제9조, 어촌어항법 제2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 국가어항을 관리하며, 지역관리 무역항·연안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시·군·구청장 재위임 가능)
- 4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위임을 통해 부산·인천· 울산·여수광양항 개별 관리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위탁을 통해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업무 관리

【 항만 관리현황 】

구분	개소	관리주체	비고
외곽시설	770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 •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
계류시설	1,093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항만공사사장	항만 외곽시설 284개소항만 계류시설 633개소어항 외곽시설 486개소어항 계류시설 460개소

- (공항) 공항 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관리 (항공사업법 제2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시행

【 공항 관리현황 】

구분	개소	관리주체	비고
공항 15	1.5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 등 14개소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1개소	

□ 유통 ·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일반수도(광역·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되며, 일반수도(마을상수도 제외)는 환경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 (「수도법」제3조)
- 환경부장관은 **광역상수도**의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
-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및 급수설비 등)은 **일반수도** 사업자가 관리

【 수도공급설비 관리현황 】

구분	연장·개소	관리주체	비고
지방상수도	203,701km	광역·기초자치단체	
광역상수도	5,379km	취고스피이고니	• 한국수자원공사 관리 5,379km
취·정수·가압시설	157개소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상수도 취·정수·가압시설
취·정수시설	445개소		•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배수시설	2,180개소	일반수도사업자	• 시설용량 11,246천㎡

○ (전기공급설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전기사업법」제27조 및 제68조)

【 전기공급설비 관리현황 】

구년	Ē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가공	30,127	한국전력공사	• 154kV 및 기타 19,723c-km • 345kV 9,380c-km • 765kV 1,024c-km
송전선로	지중 (전력구)	4,130 (578km)		• 154kV 3,710c-km • 345kV 420c-km
	수중	206		• 154kV 및 기타 206c-km

- *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은 154kv 이상만을 대상으로 함
-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관 등 가스공급시설 관리· 운영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7조,「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을 건설·운영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소관 가스공급시설을 관리

【 가스공급설비 관리현황 】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고압 도시가스 배관	4,890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5개사)	•1MPa 이상 고압 배관 관리
중·저압 도시가스 배관	45,634	일반도시가스사 (34개사)	•1MPa 미만 중·저압 배관 관리

- *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은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
-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사용시설로 구분, 열수송관 등 시설 관리는 공급구역별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담당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자체(지방공사 포함)와 공급구역별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열수송관 등 공급시설의 운영·관리

【 열공급설비 관리현황 】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열수송관	4,278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역자치단체 민간사업자	 서울에너지공사 208km 부산광역시 관리 37km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리 2,240km 민간사업자(33개사) 1,793km

○ (통신구) 다수의 통신 케이블을 수용하는 지하 구조물로서 **KT가 다독 과리**

【 통신구 관리현황 】

구분	개소	관리주체	비고
통신구	230	KT	

- (공동구) 공동구 관리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 (「국토계획법」제44조의2)
-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관리·운영 위탁

【 공동구 관리현황 】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공동구	170	광역·기초자치단체 (위탁운영: 시설관리공단)	• 국토부: 서울(8)·대전(1)·세종(1) • 행안부: 부산(1)·인천(5)·광주(1)· 경기(8)·충북(1)·충남(1)· 전남(1)·경북(2)·경남(1) ※ 국토부·행안부는 재난관리

○ (송유설비) 송유관 설치자 또는 송유관 관리자가 관리·운영하고, 송유관 설치자는 송유관 관리자에게 관리를 위임 가능 (「송유관안전 관리법」제2조 및 제6조)

【 송유설비 관리현황 】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송유관	1,344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국방부(위탁: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SK에너지	 공군 관리 39km 국방부 관리 74km 석유공사 관리 26km 송유관공사 관리 1,104km SK에너지 101km

□ 방재시설

○ (하천) 하천관리청이 관리하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 (「하천법」제2조 및 제8조)

【 하천 관리현황 】

구분	연장(km)	관리주체	비고
국가하천	3,603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	26,252	시·도지사	

- (댐) 댐관리청(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 관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댐관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용수댐을 관리, 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 댐 관리현황 】

구분	개소	관리주체	비고
다 목 적댐	20	한국수자원공사	• 한강 3, 낙동강 10, 금강 2, 섬진강 2, 기타 3
용수댐	14	한국수자원공사	• 태백권 2, 포항권 3, 운문권 1, 울산권 4, 거제권 2, 여수권 1, 전남북부권 1
홍수조절댐	3	한국수자원공사	• 평화의댐, 군남댐, 한탄강댐
발전댐	21	한국수력원자력	• 수력댐 8개소, 양수댐 13개소

-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농어촌정비법」제10조 및 제18조)
- 국가(농림축산식품부)가 정비한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정비한 저수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관리 (「농어촌정비법」제16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 저수지 관리현황 】

구분	개소	관리주체	비고
저수지	3,406	한국농어촌공사	
	13,883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공공하수도·개인하수도로 구분되며, 공공하수도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설치·관리 (「하수도법」제2조·제18조)
-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하수도법」제19조의2)

【 하수도 관리현황 】

구분	연장·개소	관리주체	비고
하수도	149,030 km	광역·기초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500㎡이상)	648개소	광역·기초자치단체	• 시설용량 26,107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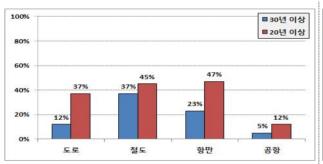
참고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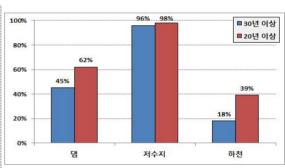
구분	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비고
	도로 (국토부)	고속국도(소유) 일반국도(소유·관리) *국토부 11,719km	지방도 이하 (소유·관리) *지자체 85,979 ^{km}	고속국도(관리) *한국도로공사 3,991km	민자도로(관리) *48개 법인 776km	102,465 ^{km}
	철도 (국토부)	일반·고속철도(소유)	도시철도(소유)	일반·고속·도시철도 (관리) *철도공사, 철도공단, 6개 지방공기업 1,458km	민자철도(관리) *18개 법인 268 ^{km}	1,725 ^{km}
	공항 (국토부)	공항(소유·관리)		공항(관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5개소
중대형 SOC	항만 (해수부)	항만·어항(소유·관리)	항만·어항(관리) *7개 지자체	항만*·어항**(관리) *4개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1,863개소 (항만:917, 어항:946)
	댐 (환경부)	댐(소유)		댐(관리) *수자원공사		37개소
	발전댐 (산업부)			댐(소유·관리) ∗한국수력원자력		21개소
	저수지 (농식품부)	저수지(소유)	시·군 저수지 (소유·관리) *지자체 13,883개소	저수지 (일부 소유·관리) *농어촌공사 3,406개소		17,289개소
	하천 (국토부)	국가하천(소유·관리) *국토부 3,603km	국가하천(보조관리) 지방하천(소유·관리) *지자체 26,252km	보 구간(16개), 아라천 (위탁관리) *수자원공사		29,855 ^{km}
	상수도 (환경부)	광역상수도(소유)	지방상수도 203,701km (소유·관리) 지방상수 취·정수시설 445개소	광역상수도(관리) *한국수자원공사 5,379km 광역상수 취·정수·가압시설 157개소 배수시설 2,180개소		209,080 ^{km}
	하수도 (환경부)		하수관로 149,030km (소유·관리) 하수처리장 648개소 (500㎡ 이상)		민자사업 *하수관로 106건 8,835㎞, 하수처리장 46개소	4,890km
	가스관 (산업부)			가스관(고압 배관) (소유·관리) *한국가스공사 4,865km	가스관(고압 배관) (소유·관리) *5개 도시가스사 33㎞	4,890km
지하 매설물	송전선로 (산업부)			전력구(소유·관리) *한국전력공사		598 ^{km} (지중)
"	송유관 (산업부)	공군(소유·관리) 39km 국방부(미군) 78km *송유관공사 위탁		석유공사(소유·관리) 26 ^{km}	대한송유관공사 (소유·관리) 1,104km SK에너지(소유·관리) 102km	1,344 ^{km}
	열수송관 (산업부)		서울(서울에너지공사, 208 ^{km}), 부산(37 ^{km})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관리) 2,240km	GS파워 등 33개사(소유·관리) 1,793 ^{km}	4,278 ^{km}
	통신구 (과기정통부)				KT(소유· 관리)	230개소
	공동구 (국토· 행안부)	국토부 10개소 (서울·대전·세종), 행안부 21개소 (9개 광역 지자체)	12개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위탁 등 포함			31개소 170 ^{km}

4. 기반시설 관리수준

- □ (노후화)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
 - (중대형 SOC) 도로, 철도, 항만 등 65,076개소('18.12. 기준) 중에서 경과연수 30년 이상 시설 비중은 36.8%이며, 20년 후에는 78.9%로 2배 이상 증가 예상
 - 시설별로 **3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은 **저수지**(96%)가 가장 높으며, 댐 (45%), 철도(37%), 항만(23%) 등의 노후화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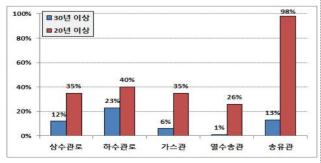


【 교통시설 노후화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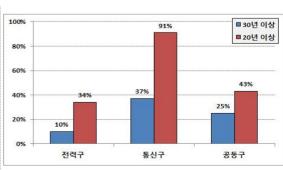


【 방재시설 노후화 현황 】

- (지하시설) 상수·하수관로, 가스관, 송유관 등 414,679km('18.12. 기준) 중에서 **경과연수 30년 이상** 시설 비중*은 **14.9**%이나, 10년 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년 후에는 **63.1**% 차지
- 시설별로 **3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은 **통신구**(37%), 공동구(25%), 하수 관로(23%) 외에는 낮으나, **20년 이상 비율***은 **높은 편**
 - * 20년 이상 비율 : 송유관 98%, 통신구 91%, 공동구 43%, 하수관로 4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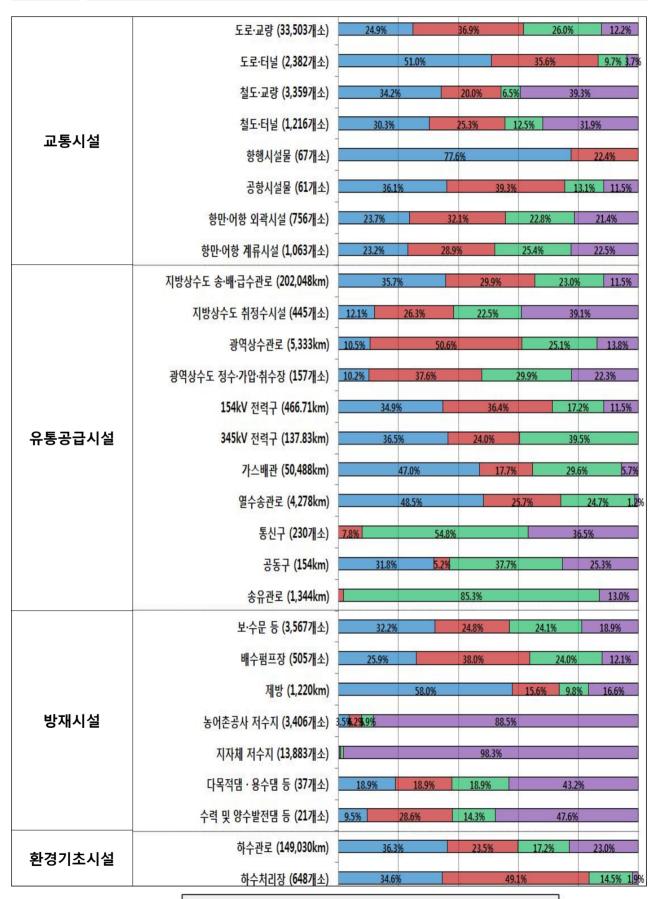
【 지하관로 노후화 현황 】



【 지하구 노후화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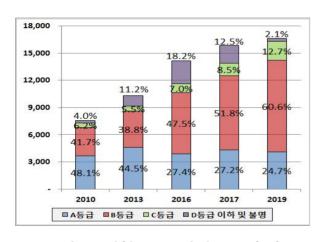
참고

기반시설의 경과연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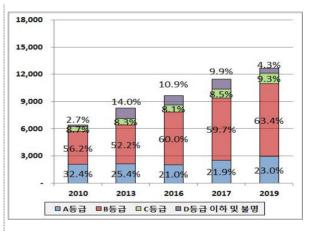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 □ (안전등급) 중대형 SOC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편이나, 지하시설물은 시설별로 관리 수준이 다소 상이 ('19년 기준)
 - (중대형 SOC) 15종 기반시설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종 시설물(건축물, 민간 제외)은 체계적 관리로 인해 관리상태가 우수
 - * 15종 제1·2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A·B 비중 : '10년 89.1%→ '19년 85.8%
 - 다만, **사용연수 증가**에 따라 **A·B등급** 시설물 일부가 **C등급**으로 전환 (C등급 비중 : '10년 7.3%→ '19년 11.2%)
 -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A·B등급 시설물 비중은 유사*
 - * A·B등급 시설물 비중 : 국가 및 공공기관 '10년 89.8%→ '19년 85.3% 지자체 '10년 88.6%→ '19년 86.4%



【 국가 중·대형 SOC 안전등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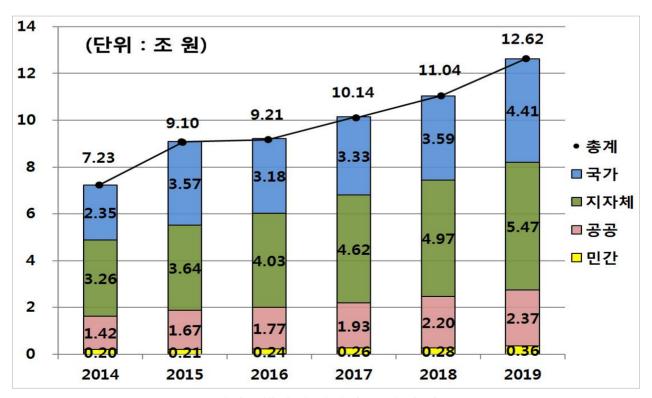


【 지자체 중·대형 SOC 안전등급 추이 】

- 댐, 옹벽·절토사면(도로·철도)은 A·B등급 시설물 비중이 낮은 편*
- * (댐) '10년 47.3%→ '19년 34.6%, (옹벽·절토사면) '10년 87.6%→ '19년 79.2%
- (지하시설물)「시설물안전법」 대상 상수도·공동구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그 외 지하시설은 안전등급이 없어 확인 불가
 - * 송유관은 정기점검. 열수송관은 자체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
- '19년 기준 **상수도·공동구** 중 **A·B등급** 시설물 비중은 **94.3**%로서 '16년 대비 크게 증가*
 - * 상수도·공동구 중 A·B등급 시설물 비중 : '16년 37.9%→ '19년 94.3%

5. 기반시설 관리 투자현황

- □ (재원부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관리 주체가 소요 재원 부담
 - 일반도로, 하천, 저수지, 항만, 공항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위탁관리 포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은 국비·지방비로 관리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사용·수익하는 시설*은 **대부분 해당 기관**이 유지관리 비용 부담
 - *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공항(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댐(한국수자원공사·한국 수력원자원), 송전선로(한국전력공사), 가스(한국가스공사·지역사업자), 통신구 (KT), 송유관(대한송유관공사) 등
 - 다만,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국비로 비용 일부 지원
 - * 시·군 저수지 개보수,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가스·열수송관 교체 융자 등
- □ (투자현황) 지난 6년간('14~'19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 (국비 20.4, 지방비 26.0, 공공 11.3, 민간 1.6) 투자
 - * '14년 7.2^{조원}→ '15년 9.1→ '16년 9.2→ '17년 10.1→ '18년 11.0→ '19년 12.6



【 관리주체별 유지관리 투자 추이 】

- (중대형 SOC)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투자가 증가
- 교통시설 중 도로·철도·항만은 국가 및 공공기관 위주로, 공항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설 유지관리 투자가 증가 추세
- 국비 투자 위주인 댐·하천·저수지 등의 방재시설은 '15년 저수지 분야의 일시적 증가(가뭄 대응)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4,000
2,000
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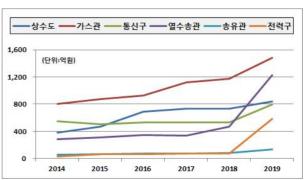
【 중대형 SOC 국가·지자체 투자액 】

【 중대형 SOC 공공·민간 투자액 】

- (지하시설)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투자는 큰 폭 증가, 가스· 송유·열수송관 등에 대한 공공·민간 분야 투자도 완만하게 증가
- 상·하수도는 지반침하·도심침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년부터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이 크게 증가
- 가스·송유·열수송관·전력구 관련 공공기관·민간 투자는 '19년에 대폭 증가
- * 통신구 관련 유지관리 투자(민간, KT)는 매년 500억원 수준 유지



【 지하시설 국가·지자체 투자액 】



【 지하시설 공공·민간 투자액 】

참고

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총		72,287	90,968	92,070	101,395	110,374	126,180	593,274
국가	소계	23,490	35,726	31,791	33,286	35,904	44,085	204,282
지자처	소계	32,575	36,429	40,254	46,156	49,736	54,731	259,881
공공	소계	14,178	16,674	17,674	19,306	21,970	23,722	113,524
민간	소계	2,044	2,139	2,351	2,647	2,764	3,642	15,587
중대형 S	OC 소계	55,556	72,994	71,588	78,821	84,217	91,954	455,130
지하시설	물 소계	16,731	17,974	20,482	22,574	26,158	34,226	138,144
	소계	27,573	35,636	38,160	43,604	46,724	51,487	243,183
	국가	7,247	11,532	12,040	13,156	13,512	15,193	72,680
도로	지자체	12,367	14,700	15,912	19,393	20,394	21,531	104,296
	공공	7,012	8,349	9,021	9,654	11,416	13,179	58,631
	민간	947	1,055	1,187	1,401	1,402	1,584	7,576
	소계	11,914	14,956	14,421	15,336	16,936	19,522	93,086
*1-	국가	5,369	8,140	7,504	8,112	9,930	11,872	50,927
철도	지자체	1,384	1,528	1,573	1,733	1,326	1,795	9,340
	공공	5,161	5,288	5,344	5,491	5,680	5,855	32,819
	소계	2,520	2,739	2,991	3,262	3,486	3,526	18,524
さいしんしさい	국가	1,530	1,745	1,842	1,983	2,050	1,969	11,119
항만·어항	지자체	624	638	659	780	864	1,005	4,570
	공공	366	356	490	499	572	552	2,835
	소계	910	1,854	1,712	2,094	2,648	1,149	10,367
공항	국가	362	481	530	322	307	239	2,241
	공공	548	1,373	1,182	1,772	2,341	910	8,126
	소계	5,074	5,210	5,702	6,530	6,785	7,225	36,526
하천	국가	1,905	1,622	1,558	1,410	1,430	1,751	9,676
	지자체	3,169	3,588	4,144	5,120	5,355	5,474	26,850
	소계	5,821	10,316	7,328	6,690	6,386	7,891	44,433
저수지	국가	5,108	9,318	6,316	5,763	5,374	6,848	38,727
	지자체	713	998	1,012	927	1,012	1,043	5,706
	소계	1,721	2,263	1,236	1,206	1,158	1,059	8,644
댐	국가	1,634	2,141	1,075	985	944	903	7,682
習	지자체	25	38	27	54	45	31	221
	공	62	84	134	167	169	125	741
발전댐	공	22	20	39	99	92	96	368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총	계	72,287	90,968	92,070	101,395	110,374	126,180	593,274
국가	소계	23,490	35,726	31,791	33,286	35,904	44,085	204,282
지자처	소계	32,575	36,429	40,254	46,156	49,736	54,731	259,881
공공	소계	14,178	16,674	17,674	19,306	21,970	23,722	113,524
	소계	2,044	2,139	2,351	2,647	2,764	3,642	15,587
	OC 소계	55,556	72,994	71,588	78,821	84,217	91,954	455,130
지하시설	<mark>물 소계</mark> □	16,731	17,974	20,482	22,574	26,158	34,226	138,144
	소계	5,285	5,625	6,213	7,940	9,127	12,011	46,200
상수도	국가	15	85	107	949	1,159	3,356	5,671
01-	지자체	4,888	5,071	5,419	6,259	7,231	7,817	36,684
	공공	382	469	687	732	737	838	3,845
	소계	9,273	10,101	11,881	12,133	14,316	17,450	75,153
하수도	국가	-	352	500	413	1,017	1,644	3,926
	지자체	9,273	9,749	11,381	11,720	13,299	15,806	71,227
	소계	1,042	1,118	1,161	1,253	1,304	1,596	7,474
	국가	209	209	209	88	84	79	878
가스관	지자체	30	33	29	40	45	37	214
	공공	414	459	508	608	582	697	3,268
	민간	389	417	415	517	593	783	3,114
전력구	공공	29	61	64	73	72	586	885
	소계	53	63	75	77	82	138	488
송유관	공공	1	1	1	1	1	1	6
	민간	52	62	74	76	81	137	482
	소계	321	346	389	374	530	1,418	3,379
	국가	-	-	-	-	-	100	100
열수송관	지자체	36	33	39	40	63	92	304
	공공	181	214	204	210	308	883	2,000
	민간	104	99	146	124	159	343	975
통신구	민간	552	506	529	529	529	795	3,440
지하지도	국가	111	101	110	105	97	128	652
	소계	64	53	60	91	99	104	471
공동구	국가	-	-	-	-	-	3	3
	지자체	64	53	60	91	99	101	468

6. 정보화 및 연구개발 · 산업

- □ (정보화)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주체별 다양한 정보시스템 운영 중
 - 개별 시설물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형 SOC(1·2·3종)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총괄 관리
 - * 교량(BMS), 터널(TIMS), 포장(PMS), 하천(KORIMS, 이상 국토부), 항만(POMS, 해수부), 저수지(RIMS, 농식품부), 상·하수도(국가상·하수도정보시스템, 환경부) 등
 - 국가·지자체별로 개별 관리하는 **15종 지하시설물*** 관련정보를 3D 기반의 **지하정보통합지도**를 통해 통합 관리
 -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반(시추, 관정, 지질) 등

【 지하정보통합체계 주요 기능 】



<지하정보 조회>



<가상굴착-파괴포락선 분석>



<지하정보 일괄제공>



<횡단면 분석>



<위험도분석>



<지하정보 통계대시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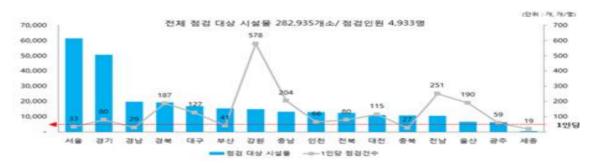
- □ (연구개발) 기반시설 유지관리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매년 증가
 - 기반시설 유지관리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18년 1,350억원 (285건)으로 '15년 810억원(114건) 대비 66.7% 증가
 - * 자동화, 3D모델변환, BIM변환, 정형데이터화,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성능예측, 의사결정, 자산관리, 보수보강, 구조물 디지털 플랫폼, 테스트베드 등
 - 기반시설 점검·진단 **장비 자동화**, IT기술 접목, 새로운 보수·보강 **재료 개발**, 재해·재난 신속 대응력 강화 등 기술개발 성과 도출
- □ (산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규모도 확대 추세
 - 점검·진단을 수행하는 Eng업체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로 구분되며 업체수와 시장규모가 증가 추세
 - 특히, 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5년('14~'18년) 사이에 1.7배 확대
 - * (점검·진단) 업체 720→ 1,053개 / 시장 1,189→ 3,472억 원 (유지관리) 업체 4,893→ 6,349개 / 시장 2.9→ 4.9조원
 - 향후 40년간 **시장규모**를 개략 추정하면 **연간 51조원**으로 추계 (유지관리비 13.8조원 + 재투자 비용 38조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선제적 유지관리로 최대 60% 비용 절감을 가정하면, 최소 연간 20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51조원의 40%)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기반시설 관리 관련 스타트업 창업사례 】

사례	주요기술 및 사업내용
ARTHRED ARTHRED MOTHER MONTH	■IT기반 시설물 홍수긴급방어 시스템
Camera 3	■ 이미지 분석기반 비탈면 유지관리용 저전력 특수 카메라 -비탈면 유지관리용 감시를 위한 지능형 영상분석 탑재(육안관찰 대체)
CENTATION OF COST OF THE COST	■ 실시간 지하매설관 3차원 전자지도 구축 시스템 -자체 제작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공사시 자동으로 3-D 지하지도 구축

① 관리체계 → 개별적·산발적 관리에 따른 정책 방향성 연계 부족

- 기반시설 전체적으로 동일한 유지관리 방향성을 갖기 위한 시설별· 주체별 유지관리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관리목표 기준 부재
- 또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점검을 통한 환류체계 보완도 필요
- 기반시설 관리의 **총괄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지자체의 계획· 이행체계 미흡으로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
 -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 시설 증가에 비해 예산·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기 대응 곤란



【 1인당 평균 관리 시설 수 ('14년 감사원 자료) 】

2 관리대상·방식 → 시설·주체별 관리수준 상이, 환경변화 대응 미흡

- 중대형 SOC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편이나, 지자체 소규모 시설물과 지하시설물은 시설별로 관리수준이 상이
 - * 전력구·열수송관·송유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정기 또는 일상점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등급 또한 부재
- 지자체 관리 소규모 기반시설의 관리 상태는 보통 이하 수준
- * '19년 고령군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결과(총 69개소): 양호 14, 보통 50, 불량 5
- 새로운 형태의 **자연적·사회적 재해·재난** 발생, 향상된 **요구 성능**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대응력 미흡**
 - * 기존의 점검·보수 요령은 신기술과 지진·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70~'80년대 설계·시공기준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은 안전기준 미반영

③ 기술·산업 → 스마트 유지관리 구축 기반 열악

- 기반시설 관리현황의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통계·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정보 신뢰도·품질 수준 저조
 - * 비정형 정보의 폐쇄적 관리로 유관기관 간 정보 상호연계가 불가능
-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하고, **인력중심**의 점검·진단으로 정확도 한계
 - * 한국의 스마트 진단·유지관리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미국) 대비 63.4% 불과 (스마트 유지관리 기획보고서, '19.9.)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기존 기술자의 이직 또는 **신규 기술자**의 **유입 미흡**
 - * 잦은 야간작업, 작은 시장규모로 인한 기술자로서의 비전 부재, 저임금 등

[4] 투자·재원 → 선제적 안전투자 저조 및 투자 불균형 발생

- 급격한 기반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 및 계획은 미흡
-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인 10년 이내에 **투자** 확대가 요구되나, 정확한 실태진단 및 비용추계 등 제반여건 미비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하나, **현실적 난관 존재**
- 중앙정부는 관련 세수 폐지와 분산된 재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힘든 상황
- * 기반시설 주요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기한이 '21년이며, 노후 시설 정비 관련 예산도 여러 특별회계와 보조금으로 분리·지원되어 효율성 낮음
- 기반시설 다수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역량 격차 발생**
- 기반시설 성능개선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가 **필요**하나, 제도 미비와 부정적 인식으로 적극 추진이 곤란

제3장 기본계획의 체계

- 1. '20~'25년 기반시설 관리 정책 기본방향
- 2.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 □ 단기 대책이 아닌 **20년 후**를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
- ㅇ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목표치를 새로이 설정하고 정책 방향이 변경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장기 비전과 단기 목표 설정
 - * 일본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의 경우 '30년까지 노후화로 인한 인프라 중대사고 "O"化 비전 아래. 안전svs. 구축. 종합적·일체화 관리 실현 목표 설정
-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 및 제반 여건 마련
- o「기반시설관리법」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 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인프라 총조사 등 기반조성에 중점
 - * '20년말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기적 기반시설 관리체계 가동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o 유지관리 투자 지연으로 서비스·안전 저하, 투자부담 증가의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 SOC 유지관리에 적기 투자 필요
 - * (미국) 시설 상태 "D" 수준. 노후화로 교량 붕괴→ 10년간 1.199조원 투자 (일본) 30년 초과 기반시설 50%↑, 터널 붕괴→ '30년까지 133조원 투자
- □ 국가·지자체 및 민간·공공의 기반시설 관리수준 동반 상향
- o 특정 시설·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균형적인 재정 투자·지원 계획 및 관리기준 수립
 -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지원,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되.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의견 존중
- □ 미래사회 대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유지관리** 도입
- ㅇ 드론, 디지털트윈 등과 접목한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기여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비전

2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미션

기반시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목표

- ◈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년스 정립
- ◈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중점 과제

[관리체계]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종합적 · 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관리대상 · 방식】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합리화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육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

【투자·재원】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 현 재 】

【변화】

변화 모습

안전점검 투 자 관리체계 관리방식 정 보 화 기술·산업 보이는 위험만 처리 신규건설 위주 투자 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 경험의존 예측·수동 관리 기관별 분절적 관리 인력 중심의 산업

잠재된 위험도 발굴·해소 노후 시설 선제적 투자 강화 총체적·선제적 관리 \Rightarrow 빅데이터 기반 예측·자동 관리 플랫폼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 1.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2.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3.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 육성 추진
- 4.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1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입체적 이행 체계를 구축

【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 **②**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 ⇒ 관리체계 및 제반 여건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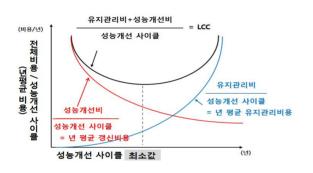
1.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 종합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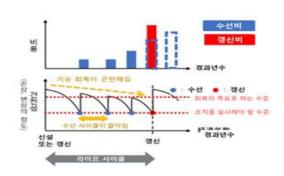
-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별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등의 관리감독기관은 5년 주기의 관리계획을 수립 (~'20)
-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리주체에 통보
-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기반시설관리법」에 정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관리계획으로 인정
-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주체**가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의 **입체적 관리체계** 구축 ('21~)
 - * 일본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계획을 기본계획-행동계획-개별시설계획으로 3원화하여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하위계획 수립 의무화
-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기관에 실행계획 관리·감독 근거 마련 ('20)
-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관리 시설도「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강화 및 생활편의 증진 (*20)
 - *「기반시설관리법」개정으로 관리주체를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까지 확대

□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수준 상향

-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 ('20)
 - * 20년 이상 노후 지하관로 정밀점검 실시(5단계 안전등급 부여) 및 정기점검 강화(1회/년→ 2~3회/년), 30년 이상 노후관로 교체 또는 개선 원칙 등 포함
- ** 500억 원 미만 성능개선사업 타당성을 기술적 평가(성능평가 결과),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사회·인구경제·환경적 변화)로 판단
- **관리감독기관**은 공통기준에 적합한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기준을 설정하여,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관리 실시 ('20)



【 생애주기비용(LCC) 개념 】



【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비용의 관계 】

- 시설물의 점검·진단에 있어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모두 평가하는 성능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점검수준을 상향 (관리감독기관, '21)
 - * 「시설물안전법」 성능평가 대상시설은 복합시설의 평가기술과 지표를 고도화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

□ 유지관리 순환구조 정립

- 관리주체의 시설별 점검·진단(성능평가)-보수·보강(유지관리·성능개선)-관리이력 기록-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유지관리 순환구조 정립
- 관리감독기관이 시설별 '유지관리·성능개선 업무 표준매뉴얼'을 사례 기반으로 작성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급·교육 실시 (~'21)

2.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 기반시설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반시설 관리 정책** 및 **계획·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20~)
 - *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장관 등), **민간위원**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반시설관리협의체**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 정책 등을 공유·발굴·확산하고 위원회를 지원 ('20~)
- * 국토교통부·관리감독기관·기초지자체, 전문가, 민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지자체·관리주체가 참여하는 기반시설별 유지관리 포럼을 구성하고 위원회·협의체 지원 ('20~)

□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책지원

- (가칭)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통해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 ('20,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업체 감독,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
- 또한,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 사전검토,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수립 지원, 기반시설 실태조사 대행* 등의 업무 수행
- *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도 기반시설 실태조사 대행 업무 수행

□ 유지관리 이행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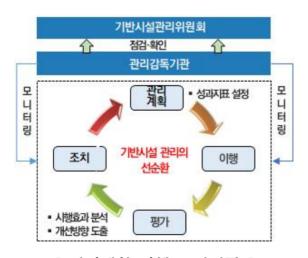
- **관리감독기관**의 기반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조직**을 우선 보강 하고, 점진적으로 유지관리 인력도 확충 ('20~)
- 국토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은 총괄 담당자 지정 및 유관조직 활용

□ 관리계획 이행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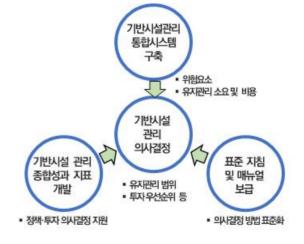
-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통해 점검·확인 ('21~)
 - * 기반시설관리 분과위원회에서 기반시설별로 주기적인 점검·확인 시행
-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시행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
- 관리계획 수립 이후,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등의 홍보를 통한 제도 조기 정착·이행 ('20~)

□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 유지관리 범위, 투자 우선순위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 방법을 표준화하고, 지침·매뉴얼을 개발하여 관리주체에 보급 ('20~'22)
- 기반시설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험요소, 유지보수 소요, 비용 등을 DB화하여 의사결정 지원
- **15종 기반시설 관리를 종합**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 ('25)
 - * (예시) 15종 기반시설 평균 안전등급,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재해율 등



【 관리계획 이행 모니터링 】



【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 】

2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안전·유지관리 규정 강화·제도개선과 지하시설물을 비롯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적극 관리를 통해 안전사각 지대 해소

【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①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합리화
- ②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❸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 ⇒ 국가·지자체 및 민간·공공의 기반시설 관리수준 동반 상향
- 1. 기반시설 안전 · 유지관리 합리화

□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

- 각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토록 모든 기반시설 개별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 ('20~'21)
-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시설별 안전등급이 "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투자·관리 ('20~)
 - * 관리감독기관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이력을 관리

【 주요 기반시설 유지관리 목표 】

◇ 교통 SOC

- •(도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보통 이상으로 관리, 포장상태 양호수준으로 개선
- (철도) '22년까지 일반철도 89개 노선(3,421km), 고속철도 1개 노선(693km) 개량
- (공항) '21년까지 6개 항행시스템 현대화, '22년까지 20개 공항시설 내진보강 완료
- •(항만) 항만·어항시설물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 방재시설

- (**하천**) 제방 등 하천시설물 보통 이상으로 관리, 수문 자동화 성능개선 추진
- (저수지) 보통 이상으로 관리, 30만톤 미만 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시행
- •(**댐**) 90% 이상을 안전등급 양호 이상으로 관리

□ 기반시설 안전 관련 규정 합리화

- 이상기후·지진 대비, 점검 신기술 반영, 기반시설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춰 기존 시설별 점검·유지관리 실시지침 마련·정비 (~'21)
 - * 특히,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으로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약화로 땅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비한 점검·보수 요령 정비
-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화 방안***을 지속 추진 ('20~)
 - * 점검대상 선정 시 관계기관 협의 강화,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게시 적극 실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
-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주체가 **사고조사,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설계·시공단계로 환류**하는 시스템 마련 ('21~'23)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준공 후 20년**이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매 5년 원칙)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 ("20~)
- 지하시설물 중 **사고 우려 구간**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 (현행 1회/1년→ 변경 2~3회/1년)
-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하수·가스·송유·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 ('20~)
 - * 시설 특성, 안전도, 사고발생 시 영향,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원칙 설정
- 땅꺼짐 사고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보수 대상의 **교체·보수** 추진 ('20~'23)
-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광역·지방상수도 개량·정비 지속추진 (~'27)
- * 재정이 열악한 郡지역(15개소)은 '20년까지 완료, 市지역은 '21년부터 추진
-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의 난연성능 보강, 화재탐지설비 설치 등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설비·구조물 보수·보강 지속 추진 ('20~)

2.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소규모 시설 관리 강화

-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도「시설물안전법」점검·관리체계**에 포함하여 관리 추진 ('20~'21)
- 전력구·통신구도 공동구와 같이 2종 시설물 수준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시설을 추가 발굴하여 확대 지정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안전등급 D·E 등)에 대해 **IoT, 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즉시 대응체계 기반 구축 ('21~)

□ 사용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 교량·터널·상수도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폭 넓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20~'21)
 - * (現) 제원, 안전등급만 공개 → (改)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20~)
- 국민 스스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간단한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APP)^{*} 개발·배포 ('21~'22)
 - * 국민의 시설물 자가진단 결과에 관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쌍방향 의사소통)
- 시설안전 체험장 신설,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20~)

3.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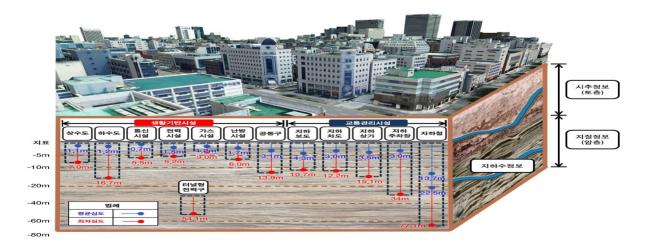
□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통신·전력 및 수도· 가스관 등의 간선은 이중화·네트워크화 추진 ('20~'25, 단, 수도는 '30년까지)
 - * 도시가스는 '23년까지 5개 구간(270km) 환상망 건설 추진

- 공동구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1)
- 공동구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지 유형별(신규 개발지, 기존 도심지)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 (現)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설치 의무→ (改) 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규정 및 설계기준(터널식) 제시
- 공동구의 높은 유지관리비 및 재난 대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 마련
- * 24시간 인력 상주 관리로 인한 높은 인건비로 수용 시설물 점용기관의 공동구 기피와 재난 신속대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의 활용 필요

□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포함한 **전국단위 3차원 지하지도**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지원 (~'23)
- 주요 도심지역의 현장굴착 및 지중탐사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지하지도의 정확성을 검증·확인 ('20~)
 - * ('20) 부산·광주광역시 2개소 내외 검증(시범사업)
- 불탐·위치오류 구간 등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가 지하지도 정확도를 개선 후 제출토록 제도 개선 ('21, 지하안전법 개정)
- **굴착공사**에 **지하지도 활용**을 **의무화**하여 활용성 제고 ('21)



【 지하공간정보 모식도 】

3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 빅데이터·3D·미래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방식을 도입을 통한 기반시설 관리의 저비용·효율화

【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1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❷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 ❸ 유지관리 분야 일자리 개선 및 산업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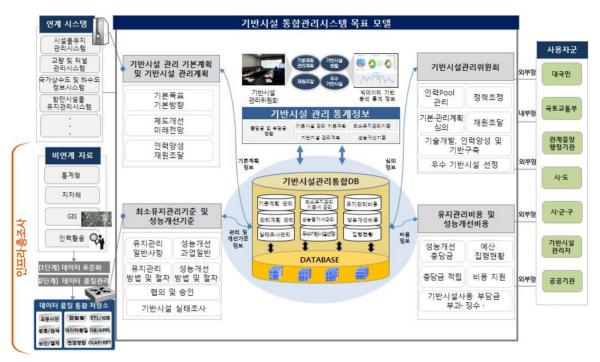
1.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실태조사) 시행

-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등을 **DB화**하고,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약 지역·시설요소의 과학적 규명 ('20~'24)
- 인프라 총조사*는기존 관리시스템 자료를 최대한 활용·검증하고, 시설별 관리계획에 따른 투자현황, 점검·보수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 우선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대표 시설물(7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와 분류체계 도출
- 인프라 총조사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건강진단서***(Report Card)를 정기 발행하여 정책 지원 및 홍보 자료로 활용 ('25~)
 - * 시설물별 안전·성능 상태, 이용 수요(용량) 변화와 미래 예측, 잔존수명 평가, 예산상황.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소요될 향후 재정 규모 등
- 향후 기반시설 관리에 소요될 **장래 비용을 추계**하고, **관리방식별 상호 비교**(선제적 관리·사후대응 관리)를 통해 선제적 투자 효과 검토

□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활용하기 위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20~'24)
- 기존 시설별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플랫폼 형태***로 정보를 통합 관리 하고,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하되 **민감 정보는 배제**
- *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이용자별 정보 접근 수준을 부여하여 보안성 강화



【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계 】

○ 시설별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플랫폼을 통한 정보통합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정보관리 공통기준** 마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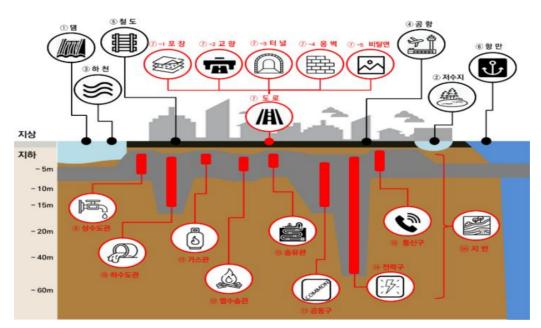
□ 지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국가가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지자체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및 행정지원 ('21~)
 - * 교량(BMS), 터널(TIMS), 포장(PMS), 하천(KORIMS, 이상 국토부), 항만(POMS, 해수부), 저수지(RIMS, 농식품부), 상·하수도(국가상·하수도정보시스템, 환경부) 등
- 관리시스템 개방 및 공동 활용, 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

2.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확대

-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R&D의 투자 확대로 교량하부·수중 등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20~)
 - * 무인장비 활용 교량외관조사 등 유지관리 R&D 6건 시행중('15~'22, 628억원)
-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을 개발하여 유지관리 기술 고도화 ('22~)
- * 지하시설물(가스관, 열수송관, 공동구 등)과 지상시설물(도로 등)을 아우르는 안전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진단, 성능해석 및 평가, 예측, 장수명화 기술



<생활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개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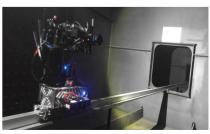
- 5G 기반 무선 CCTV·원격제어 드론,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케이블 점검로봇>



<교량 강박스 점검로봇>

□ 신기술 실증・활용체계 구축

- 스마트 진단·유지관리 신기술 및 장비의 신속한 현장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및 성능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21~)
- 기존 시설물과 미사용 SOC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하는 리빙랩 사업을 추진
- 영상장비 등 첨단 점검·진단장비의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장비 신뢰성을 확인하는 **검·인증제도 도입**
-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기반시설 점검·진단 신기술 정보제공 활용사이트 운영 ('21~)
 - * 기술개발 보상체계,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 성장과 기술인력 유입 유도

□ 핵심 분야(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SW 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 SW안전 母표준(IEC 61508) 등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SW시스템 설계·관리 공통기준*** 마련 및 적용 ('20~)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SW 안전확보 지침' 고시
- SW 시스템 안전영향도, 사고심각도 등에 따라 SW 시스템별 안전 관리등급* 체계를 개발, 중요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기반 마련 ('20~)
- * SW안전등급체계(K-SEL, Korea-Software Safety Execute Level) 개발 추진
- 핵심 분야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개선·보완, 추가개발, 신규개발 등 추진 ('20~)

3.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

□ 기반시설 유지관리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 정보개방*, 기술지원, 창업경진대회, 창업활동 지원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스타트업 활성화 추진 ('21~)
 - * 스마트 계측, IoT, 빅데이터 등은 정보개방·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R&D 및 첨단기술 정보 공유 등의 기술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입주공간, 테무기는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추진
- 드론·로봇·IoT 등 **첨단 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규인력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21~)
 - * 공학과 IT 등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분야별·등급별 재교육 과정 개발

□ 유지관리 표준품셈 정비

- 신설공사 중심에서 벗어나 유지관리 공사 특성(소규모, 긴급공사 등)을 고려하여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유지관리 품셈 발간 (*23)
- 관리주체의 **예산분배 의사결정 지원**, 발주청의 합리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사 원가산출 근거**로 활용

□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지원

- 선진국 및 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 수립 ('24)
 - *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진출 중점국 및 분야 선정, 중점국가별 상세 시장조사(유지관리제도, 시장현황, 관련 정부 및 기관, 기업 현황 등)

4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 국가·공공기관·민간의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를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적기 개선**을 적극 지원

【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①**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강화 투자 확대
- ❷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 ⇒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기반시설 관리의 골든타임 확보

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 기반시설 안전투자 중장기계획 수립

- '20년~'25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지방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 **투자**
 - * 투자계획은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 수립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구체화
- 국가·지자체는 선제적 안전투자 확대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관·민간은 자율적 중장기 계획을 통해 안전투자 확대 ('20~)
- 관리감독기관은 **향후 5년간 관리목표**와 달성을 위한 **중점 사업과 우선순위***가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
- * 관리감독기관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통해 계획 기간 내 우선순위를 선정
- 또한,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에 따라 관리주체(공공·민간)의 자율적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투자 확대 유도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의 관리목표, 중점사업 및 우선 순위의 타당성(필요성·적정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반 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 ('21~)
 - * 기반시설 관리목표, 중점 추진사업 타당성 검토, 다수 시설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절차, 기준 및 모델 개발

□ 기반시설 관리수준 상향을 위한 투자지원 확대

- **국가·지자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 ('20~)
 - *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진단·연구 및 보수·보강, 기반시설 성능개선 등
- 국가·지자체는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과 성능개선 충당금 규모, 유지 관리·성능개선 소요비용,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 *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성능개선 시급성 등을 추가로 고려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원칙

- •국가·지자체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한 경우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 지원
-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만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 지원
-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필요

◇ 국가의 지원 한도

- 지원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20%p 범위 조정가능)
- (유지관리비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차감)에서 '15~'19년 평균 유지관리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 (성능개선비용) 관리주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 (20%p 범위 조정가능)
- 법 시행('20) 후 지원원칙에 부합하나 자체 재원으로 신속한 성능개선이 곤란한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2)
 - *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관리주체의 소관시설 중 개선이 시급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21~)
 - * 국토부는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마련 ('20)

2.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및 활용 강화

-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하되, 민간관리주체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충당금 적립
 - * 충당금의 재원은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또는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으로부터 확보
-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 ('20~)
- * 관리주체는 충당금 적립·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계획에 반영
- **관리주체**가 필요에 따라 유지관리·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사용료(운임·통행료 등)에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담금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부과하되, 관리감독기관이 근거 법률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기반시설 관계법령에서 구체화* ('20~)
 - * 부담금 산정 방법, 부과요율, 부과·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

□ 추가 재원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추진

- 국가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 시책에 있어 추가 재원 부담을 대비한 재원 조성, 자금지원, 금융시책 수립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21)
-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마련 ('21~)
- 개발사업 또는 부대사업과 연계, 신규건설과 시설개량의 조합 등 묶음 사업(bundle)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 다양성 확보
- 시설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되는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은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활용**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재정부담 경감방안과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에 반영 ('21)

제5장 추진일정

- ※ 관리감독기관
 -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전략1]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추진과제	추진기관	추진일정
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가. 종합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구축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관리감독기관	~'20
• 관리주체 실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국토부(시설안전과)	'20
•기반시설 유지관리 실행계획 수립	관리주체	'21~
• 민간관리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국토부(시설안전과)	'20
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수준 상향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	국토부(시설안전과)	′20
•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관리감독기관	'20
•시설물 성능평가 매뉴얼 마련	관리감독기관	'21
다. 유지관리 순환구조 정립		
• 기반시설별 유지관리·성능개선 업무 표준매뉴얼 마련	관리감독기관	~'21
②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국토부(시설안전과)	'20~
• 기반시설관리협의체 설치·운영	국토부(시설안전과)	'20~
•기반시설별 유지관리 포럼 구성·운영	중앙행정기관	'20~
나.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책지원		
•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국토부(시설안전과)	'20
다. 유지관리 이행체계 정비		
• 관리감독기관의 기반시설 관리·감독 조직 보강, 유지관리 인력 확충	행정안전부 관리감독기관	'20~
라. 관리계획 이행 모니터링		
• 관리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이행 모니터링, 성과지표 설정	관리감독기관	'21~
•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국토부(시설안전과)	'20~
마.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 방법 표준화, 지침·매뉴얼 개발	관리감독기관	'20~'22
•기반시설 관리 종합성과지표 개발	국토부(시설안전과)	'25

[전략2]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추진과제	추진기관	추진일정
①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합리화		
가.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		
•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20~'21
• 시설별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투자·관리	관리감독기관	'20~
나. 기반시설 안전 관련 규정 합리화		
•시설별 점검·유지관리 실시요령 마련·정비	관리감독기관	~'21
•국가안전대진단 내실화 방안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	'20~
• 안전사고 조사·분석·환류 시스템 마련	관리감독기관	'21~'23
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0년 경과한 지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부여 등	관리감독기관	'20~
•30년 이상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 관리	관리감독기관	'20~
•20년 이상 경과 하수관로 정밀조사, 교체·보수	환경부	'20~'23
• 광역·지방 상수도 개량·정비	환경부	~'27
• 통신구·전력구 화재안전성 강화, 설비·구조물 보수·보강	과기정통부, 산업부	'20~
②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가. 소규모 시설 관리 강화		
• 관리 취약 소규모 시설「시설물안전법」포함 관리	국토부(시설안전과)	'20~'21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원격 모니터링 기술 도입	관리감독기관	'21~
나. 사용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 주요시설 안전정보 공개 범위 확대	국토부(시설안전과)	'20~'21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 정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	환경부	'20~
•국민 시설물 점검·조치 어플리케이션 개발	국토부(시설안전과)	'21~'22
• 안전체험장·안전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관리감독기관	'20~
③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간선 이중화·네트워크화 (다만, 수도는 '30년까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20~'25
• 공동구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도시활력지원과)	'20~'21
나.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전국단위 3차원 지하지도 구축	국토부(공간정보진흥과)	~'23
•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확인 및 제도개선 (지하안전법 개정)	국토부(공간정보진흥과)	'20~
• 굴착공사 지하지도 활용 의무화	국토부(공간정보진흥과)	'21

[전략3]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추진과제	추진기관	추진일정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가.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실태조사) 시행		
• 인프라 총조사를 통한 DB화	국토부(시설안전과)	′20~′24
•기반시설 건강진단서 정기 발행	국토부(시설안전과)	'25
나.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토부(시설안전과)	′20~′24
•기반시설 정보관리 공통기준 마련	국토부(시설안전과)	′20~′24
다. 지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국가 구축 시스템 지자체 활용 시범사업 및 행정지원	중앙행정기관	′21~
②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가.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확대		
•스마트 유지관리 R&D 투자 확대	중앙행정기관	′20~
• 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개발	국토부(기술정책과)	′22~
나. 신기술 실증·활용체계 구축		
•테스트베드 지원 및 성능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21~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제도 개선 및 신기술 정보제공	중앙행정기관	′21~
다. 핵심 분야(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SW 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 SW시스템 설계·관리 공통기준 마련	과기정통부	′20~
•SW 시스템별 안전관리등급 체계 개발	과기정통부	′20~
•SW 안전진단 실시	과기정통부	′20~
③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		
가. 기반시설 유지관리 일자리 확대		
•기반시설 유지관리 스타트업 활성화 추진	관리감독기관	′21~
• 첨단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리감독기관	′21~
나. 유지관리 표준품셈 정비		
• 유지관리 품셈 발간	국토부(기술기준과)	'23
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지원		
•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토부(기술정책과)	′24

[전략4]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추진과제	추진기관	추진일정
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가. 기반시설 안전투자 중장기계획 수립		
•기반시설 관리 강화 연평균 13조원 내외 투자	관리감독기관	'20~'25
• 안전투자 중기재정계획, 관리계획 반영	관리감독기관	'20~
• 자율적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관리주체	'20~
•기반시설 관리 종합투자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21~
나. 기반시설 관리수준 상향을 위한 투자지원 확대		
•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 지원	관리감독기관	'20~
•국가의 지원확대 제도개선	관리감독기관	'22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인센티브 제공	관리감독기관	′21~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기준·절차 마련	국토부(시설안전과)	′20
②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가. 성능개선충담금 적립 및 활용 강화		
•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 설정, 관리계획 반영	관리감독기관	′20~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구체화	관리감독기관, 기재부	′21~
나. 추가 재원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추진		
•기반시설 관리 재원조달 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21
• 민간자본 활용방안 마련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21~
• 재정부담 경감방안,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종합투자계획 반영	국토부(시설안전과)	'21

[별첨]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

※ 본 내용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반시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유관기관에 별도로 송부할 예정

1. 관리계획의 개요

□ 관리계획의 성격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유지관리·성능개선의 기본목표 및 실시계획, 성능평가·실태조사 실시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등을 포함
 -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
 -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운용
 - •성능평가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2. 계획수립의 주체·범위 및 절차 등

- □ (수립주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 각각의 기반시설별로 별도 수립
 - * (예시) 국토교통부 도로시설 관리계획, 하천시설 관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급설비시설 관리계획 등
 - (시·도지사) 소관 기반시설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
 - * (예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등
 - ※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라도 기반시설의 관리현황 및 여건에 따라 하나의 관리 계획으로 수립 가능

- □ (수립범위)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공간·시간·내용적 범위
 -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위치
 - (시간적 범위) 관리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간
 - (**내용적 범위**) 관리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항목 및 세부내용

□ 계획수립의 절차

○ 관리계획(안) 마련→ 사전 타당성 검토(국토교통부→ 위탁기관)→ 재정 분야 검토(기획재정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관리주체 통보

□ 계획수립의 의제

- 시설별 개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갈음
- 이 경우, 해당 계획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반영 되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추가·보완하여 위원회 심의 필요
- * ○○계획에 실태조사 실시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만 포함하여 심의

□ 계획의 변경

-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의 **사전 검토** 및 기반 시설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 ㅇ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 및 심의 생략
 - ※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 범위에서 변경
 - 기반시설관리법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
 -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3. 관리계획의 목차 및 주요내용 예시

목 차	주 요 내 용
제1장 관리계획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관리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1.2 계획 작성근거	- 관리계획 수립 법적 근거
1.3 계획 대상 및 범위	- 대상시설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1.4 관련법령 및 관리기준	- 관련 법령 및 상·하위 계획, 최소 유지 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
제2장 기반시설 관리현황 및 전망	
2.1 기반시설 관리현황 및 성과	- 기반시설 관리그룹 현황과 성능평가·유지 관리 및 성능개선 등 현황 및 성과
2.2 기반시설 관리여건 및 전망	- 기반시설의 관리여건 현황 및 전망 - 해외사례
제3장 기반시설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3.1 기반시설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및 사유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실시계획	
4.1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계획	- 향후 5년간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계획
4.2 보수·보강 실시계획	- 향후 5년간 보수·보강 실시계획
4.3 성능개선 실시계획	- 향후 5년간 성능개선 등 실시계획
4.4 기타 실시계획	- 기타(R&D 등) 기반시설 관리 실시계획
제5장 관리재정·인력 현황 및 확보방안	
5.1 관리재정 현황 및 전망, 계획	- 관리감독기관의 재정여건 및 전망 -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 정보 및 투자 시급성 -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부담금 및 충담금 등 재정확보 방안 및 노력
5.2 관리인력 확보	-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여건 및 확보 방안
제6장 기반시설 정보 관리체계 구축	
6.1 정보수집 및 관리	- 정보화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6.2 정보관리체계 구축·보완 방안	- 정보 관리체계 구축 계획 - 정보관리의 표준화 방안 제시
6.3 정보관리체계 활용 계획	-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4. 관리계획의 목차별 작성 주요기준

구 분	작성 기준
현 황	·(관리현황) 관리감독기관이 설정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유형별 관리그룹에 따라 기반시설 현황을 작성 ·(관리성과) 기반시설에 대해 실시한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유지관리, 성능개선의 결과를 계획 시작년도 전 5년간 실적 작성
관리목표	·(기본방향)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과 5년 단위의 목표 설정 ·(계획지표)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설정한 목표등급과 관리수준을 설정
실시계획	·(성능평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규정된 관리수준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비용 포함) ·(실태조사) 기반시설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작성(비용 포함) ·(유지관리) 목표연도 내 실시 예정인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 결과,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을 감안하여 작성(비용 포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성능개선) 목표연도 내 실시 예정인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해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판단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비용 포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관리재정·인력 계획	· (투자현황) 과거 5년(전차 계획기간)에 투자된 비용을 항목별(성능 평가, 실태조사, 유지관리, 성능개선 등)·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투자계획) 계획기간 내 투자할 비용을 항목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재원조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지방비· 기금·민간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현황, 계획기간 내 확보 목표 및 방법 등을 설정하여 작성 · (인력확보)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 확보 방안 작성
정보화계획	·정보화 관련 자료수집·관리 현황 및 계획,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표준화 방안 등을 작성